

논문지도교수 관련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대학원 학칙

제55조(학과주임교수와 논문지도교수)

-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각 학과마다 학과주임교수를 두고 개별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논문지도교수를 둔다.
- ② 특수대학원 각 전공(학과)에 부교수 이상의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소속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전공분야의 수업·연구지도에 관한 사항과 학생의 이수과목 지정 및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2조(논문지도교수 선임 및 연구계획서 제출)

-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소속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1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년퇴임시까지 석사학위 과정 학생을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을 3년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경우 논문지도교수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석좌교수 및 연구전담교원도 석사학위 과정 학생을 2년 이상, 박사학위 과정 학생을 3년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경우 논문지도교수로 선정될 수 있다.
- ②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1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3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의무)

- 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석좌교수와 특훈교수로 한다. 다만,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논문지도학생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1.8, 2017.6.30>
- ② 본교 명예교수, 타기관에서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제1항의 자와 공동으로 학위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017.6.30>
- 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제24조(논문지도교수 변경)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
 1.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2.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논문지도를 할 수 없는 때
- ② 제1항에 의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 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석사 1개학기 이상, 박사 2개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전공이 같은 동일전공 교수가 논문지도를 계속할 경우에는 논문지도 기간은 이에 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1)

[참고] 연구지도, 석사논문연구, 박사논문연구1,2 과목 운영에 관한 지도교수 배정관리

- ① 지도교수는 1기말에 배정해야 함
- ② 지도교수의 변경은 매학기 지도교수 변경기간 (3월, 9월)에 변경가능하며, 연구지도 담당교강사 및 논문지도비에 반영됨
- ③ 연구지도에 대한 논문지도비는 매학기말 (8월, 2월) 지급됨
- ④ 지도교수가 연구년 해당 시에도 연구지도 수업 담당 가능함.